Ⅳ. 정책지원 필요사항과 보험업계의 과제

1.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

◇ 보험사업이 일정궤도에 진입하기까지 보험료보조(자연재해보험의 경우), 보험가입대상시설의 전산망 구축, 재보험지원,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

· 신규로 보험제도에 편입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 적정화

· 거대리스크로 인한 보험회사의 위험분산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인수 환경을 조성

□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원(자연재해보험)

o 자연재해보험제도는 현행 정부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체계를 민간의 보험제도로 전환하여 피해보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, 민간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참여를 유도함이 정책목표

o 이러한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되, 정부는 현행 복구비지원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지원

- 의무가입분 보험료에 대하여 90% 100%까지 정부가 부담하며, 임의가입분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하되 주민부담분의 일정비율(30% 50%)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

□ 정부가 최종적인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

o 신규 보험제도는 타 보험종목에 비해 거대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, 보험시장의 담보력은 한계가 있으므로, 보험회사의 파산가능성, 재보험처리의 곤란 등을 고려,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제공

- 재난보험의 경우는 영국의 테러보험 Pool과 같이 일정액 이상(예 : 160억원)의 거대사고시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강구

- 자연재해보험은 일정 손해율 이상의 초과손실분에 대하여(예 : 예정 손해율 150% 초과) 정부의 재보험기금으로 책임을 부담하되, 민간 보험시장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초과손해율 수준을 결정

□ 가입대상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

o 보험가입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행정부처의 전산시스템으로 집적·관리하고 이를 보험통계와 전산망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방재활동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

□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

o 재난보험의 경우「원인자 책임부담 원칙」상 자연재해와 같은 정부의 보험료 직접보조는 어려우나 보험료부담이 높아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난보험료를 전액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

2. 보험업계의 과제

◇ 새로운 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손해보험업계는 대규모 신규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게되나 정책성보험으로 운영되는 만큼, 공익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하는 과제를 안게됨

◇ 신규시장 규모는 자연재해보험, 재난보험 각각 1천억 1천5백억원 수준으로 예상 *

*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초기 보험가입대상을 29개 시설로 가정하여 정부의 복구비 무상지원분을 기준으로 추산

재난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대상 시설을 10만개로 설정하고, 시설당 평균보험료를 보상한도액을 감안, 100만원 1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산

□ 보험제도의 공익성 제고

o 재난 및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의 분석·평가 및 리스크 통제, 재무대책 등 위험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

- 현행 화재 등 재물위험 중심의 위험관리체제에서 가입대상별 위험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위험관리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사고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보험이 적극적으로 담당

o 신속·공정한 손해사정으로 보험제도의 효용성 제고

- 의무가입 환경하에서 사고후 피해에 대한 배상·보상은 제도의 효용성과 집적 연계되는 분야이므로 정부의 재해·재난수습체계와 공조 등 신속·공정한 보험금지급을 위한 시스템화를 조기 정비

o 보험상품의 지속적인 정비·관리

- 제도도입 이후 운영상 나타나는 보험가입자 불만이나 제도적 불합리를 약관, 요율에 적기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등에 적극 대처

□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기 구축

o 위험의 합리적 선택과 관리를 위한 선진 언더라이팅 체계 구축

- 리스크특성, 경험실적 및 안전진단 결과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별 언더라이팅 가이드 마련 등 합리적 위험선택 유도

o 거대위험 특성에 맞는 준비금 적립체계의 강화

- 지급불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보험사업와 구분된 재해·재난리스크 자체의 독립적인 준비금 적립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험보유의 평준화를 도모

o 합리적인 보유와 재보험대책 수립

- 재보험거래로 인한 회수불능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담보력이 있는 해외 재보험자와 거래선 구축